

시 행 세 칙

제 1장 선거권자

선거권자는 96년 10월 중에 확인된 연세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가 판단하여 부당하게 징계받은 자와 구속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제 2 장 입후보자 자격 및 구비 서류

제 1조 (입후보자 자격)

가. 6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단, 복학생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나. 연세인의 6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총학생회는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2조 (입후보자 구비 서류 :총 7장)

가. 입후보자 등록 원서

나. 추천단 서명서

다. 후보자 소견서(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라. 재학 증명서

마. 흑백 사진 3매(8×10)와 원본 필름 1매

바. 선거 공약, 으뜸 구호, 인력서

사. 선거 운동 본부 전원의 명단(직책 명시)

* 규제 사항 : 만일 후보의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 시간(오후 6시) 10분이 지나도록 완비된 등록이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받지 않거나 취소시킨다.

제 3조 (기호)

기호 사용은 하지 않으며, 모든 선전물과 포스터, 투표 용지에는 으뜸 구호와 후보 이름만을 기재한다.

제 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제 1조 (구성)

현재 재학 중인 연세인 중에서 (학생회칙에 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의결로써 위원장과 3인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집행부 5인 이상을 둔다.

제 2조 (회의 운영)

선거가 공고된 대로 다음부터 회의를 시작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각 후보 선거본부장이 선출되는 대로 회의를 한다.

제 3조 (역할)

가. 중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다.

나. 중선관위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 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 중선관위의 결정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중선관위는 컴퓨터 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내 '연세대학교 동호회'에 선거 관련 방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선거 관련 방의 내용은 학우들의 의견 개진과 각 선본의 입장 등으로 한다.(자세한 사항은 선본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라. 다음 사항은 중선위로 이월한다.

- 1) 후보 자격 박탈
- 2) 선거 무효
- 3) 선거 일정 재조정
- 4) 기타 중요 사항

제 4장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대 선관위)

제 1조 (구성)

가. 단대 선관위장은 현재 재학 중이며 대표성을 가진 자를 단대 운위에서 추천하여 중선관위에서 임명한다.

나. 단대 선관위원은 재학 중이며 대표성을 가진 자를 단대 선관위장이 추천하여 중선관위에서 임명한다.

제 2조 (역할)

· 중선관위와 동일하며 단대 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 단대 선본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중선관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대 선관위는 중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중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되는 사안을 그 단대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단대 선관위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 선관위원을 단대 선본의 합의하에 임명한다.

규제 사항 : 단대 선관위원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중선관위로 명단을 제출한다. 명단 제출이 늦어질 경우 하루의 여유를 더 주되 그래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선관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단대 선관위의 최종 결정은 3월 11일 오후 6시 이전에 내려서 단대에 통보해 준다.

제 5장 참관인

제 1조 (자격)

가. 각 후보자는 투표소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해당 대학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단대 실정에 따라 단대 선거 참관인과 중앙 선거 참관인을 동일인이 할 수 있다.

나. 참관인은 현 학생회 간부나 중앙·단대선거본부 성원이 할 수 있다.

다.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인이 명찰을 달고 대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각 후보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참관인 명단과 증빙서류 (학생증, 주민등록증, 도서대출증, 등록금납입영수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본)를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제 2조 (역할)

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감독·참관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이의를 단대·중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다.

나. 선거구 안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추천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조 (규제 조건)

가. 참관인은 투표구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이 투표구 내에서 부정 행위를 할 경우, 단대 선관위장과 다른 후보측 참관인이 만장 일치로 인정할 시에 각 후보 선거 본부의 합의를 거쳐 단대·중선관위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한다. 이 때, 추방당한 측의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참관인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단대 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부착하고, 자신의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명찰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선관위에서 기입한다.)

라.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 2)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언동이나 물품을 소지한 경우)
- 3) 기타 단체 선관위에서 부정 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 4조 (기타 사항)

가. 해당 대학 선거구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해당 대학 선관위와 상대 후보자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은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단, 해당 대학 선관위장의 허가하에 1시간 이내 가능)

다. 참관인은 투표 당일 오전 8시까지 중선관위실에서 단체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하고 이틀동안 투표함을 관리한다.

라.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대학 선관위장의 입회 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단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중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 6장 선거 운동

제 1조 (정의)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이다. 단, 단순한 선거예의 의견 개진은 선거 운동이 아니다. (예: 추천인 서명 활동은 선거 운동이 아님)

제 2조 (구성)

선거 운동은 강의실 유세, 대중 유세, 정책, 공약 선전, 선동대와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후보들의 사람 만나기, 학내 언론에의 보도,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 및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제 3조 (기간)

선거 운동은 입후보 확정 공고(3월 13일 오전 6시)후부터 투표 전날(3월 23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 4조 (추천인 서명)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 운동이 아니다. 연서판은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이름, 출마의 변, 으름 구호 및 기치, 선거 본부의 표시, 서명 용지(중선관위에서 작성 배포—총학, 총여)로 구성한다.

제 5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단체 선관위원

(단, 단체 선관위원은 중선관위에서 위촉받은 날로부터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다.)

나. 학생회 공식 지위에 있는 자

즉, 중앙운영위원 및 총학생회 집행부 전원과 단체 학생회 운영위원 및 집행부 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 6조 (학생회 임원 중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가. 내년도 학생회 간부를 하계된 경우는 올해의 지위를 사퇴할 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임기를 12월 31일에서 이양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내년도 학생회 당선자와 신임 간부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나. 학생회 공식 지위에 있는 자는 지위를 일시 또는 영구 사퇴했을 때만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 회장단 후보를 포함한 선거운동본부원은 학생회 공식 지위를 후보 등록 전까지 일시 또는 영구 사퇴해야 한다.

제 7조 (학생회의 선거운동 금지)

각 과 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와 동연 분과, 여학생회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선거에 관한 의사 개진을 할 수 없다.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면 선관위를 통해서 한다.

제 8조 (선거 예산)

각 선본은 모든 선거 예산을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 시간에 공개한다.

제 9조 (설문조사, 서명운동)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선거 본부 명의로 설문 조사나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중선관위에서 각 선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10조 (기타 사항)

이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중선관위와 각 선거 본부 대표가 모여 논의 결정한다.

제 7장 유세 및 선전

유세는 개인 유세, 합동 유세, 정책 토론회로 나뉘며 시기는 선거 시기에 준한다.

제 1조 (개인 유세)

개인 유세 선전물은 선전용 포스터, 대자보, ~~중형 부착물~~, ~~대형 부착물~~, 인쇄 매체, 선본 전용 자보판으로 제한하며, 이
각 사항의 위반시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제거할 수 있고 경고 조치하여 이를 선관위 명의로 공개한다.
선전물의 내용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사진, 그림, 글, 기호 등으로 한다.

가. 선전용 포스터

1) 4절(40×54)크기로 하며 각 후보자가 중앙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한다.

2) 색은 2도 색상으로 제한하며 2종류까지 허용한다.

나. 대자보(전지)는 그 크기와 매수를 제한한다.(선관위 회의에서)

다. 중형 부착물은 20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단 1매는 대자보 2장 소요)

라. 대형 부착물은 2종류로 제한하며 부착 장소는 선관위가 지정한다.

15×28m : 총학생회는 학생회관 식당 입구 위, 총여학생회는 학생회관 서점 입구

전지 3장 연결(24×33m) :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교문 앞에 부착한다.

입체 표현물과 개인이 제작한 선전물은 금지한다. 단, 입체 표현물에 속하는 선전물은 선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마. 인쇄 표현물은 3종류로 한다.(신문, 리플렛, 자료집)

1) 신문은 선거 운동 모든 기간동안 한 종류의 형식과 내용으로 제한하고, 칼라 인쇄는 금하며 신문 용지 이하로 한다.

2) 리플렛은 A4 용지로 분량은 3매 이하로 하며, 선거 운동 모든 기간 동안 세 가지 이하의 내용과 형식으로 제한하고 칼라 인쇄는 금한다.

3) 자료집의 분량은 70쪽 이하로 하며 각 후보자가 기획하고 중선관위가 합본으로 제작한다. 또 그 제작비는 중선관위 및 각 선본에서 부담한다.

4) 리플렛과 신문은 선거 운동 전 기간에 걸쳐 1만 5천부 이하로 규제한다.

바. 선본 전용 게시판은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게시판의 내용과 형식은 각 선본의 자율에 맡긴다.

사. 만약 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즉각 중지시킨다. (수량 확인은 배포전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분량이 초과하거나 수량 확인 없이 배포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고 조치 취하고 배포를 중지시킨다.)

아. 후보자 포스터는 각 선본이 기획하고, 중선관위에서 제작하며, 포스터 부착은 중선관위와 선본에서 직접 수행한다.

- 자.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직인이 없는 선전물은 선관위가 제거하고, 경고 조치하며, 선거 운동 첫째날은 이전에 직인을 받아 아침 6시부터 부착을 시작한다.
- 차. 방송 유세는 금하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학내 언론 매체의 보도를 허용한다. (연세 춘추, YBS, 통일연세 TV방송국 등)
- 카. 선거 관련 학내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은 선관위와 각 선본의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합동 유세)

- 가. 합동 유세는 등록 이후 일괄적으로 추첨에 의해 순서를 결정한다. 단 유세 시작 10분 전 까지 후보자 미도착 시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세 순서는 후보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 나. 합동 유세 시간은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한 후보자의 유세 시간은 지지 연설, 본연설을 합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3차 유세 기간을 합하여 총 10분 이상 경과시 중선관위에 의해 경고 조치 된다.
- 다. 후보자가 제작한 현수막은 합동유세시에만 후보당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선관위의 허가 하에 사용한다.
- 라. 한 후보의 합동 유세 연설 중 타 후보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 마. 피켓, 깃발 수는 후보자 간의 협의를 거쳐 중선관위가 제한한다.
- 바. 합동 유세 시간 동안 각 선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제 3조 (정책 토론회)

정책 토론회는 각 선본과 중선관위의 합의 하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서 모든 후보자가 참가해야 열릴 수 있다.

제 8장 투 표

제 1조 (기간)

투표는 1997년 3월 24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오후 6시까지 줄을 선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제 2조 (투표구 지정)

투표구는 각 대학별 1개구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구당 투표함은 1개로 한다.(단 문과대, 상경대, 공과대, 사회대, 생활과학대, 교육과학대는 2개 구로 할 수 있다.)

제 3조 (투표구 선전물)

투표구에는 투표 용지 사용법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시킨다.(단 중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 1개는 반드시 부착한다.)

제 4조 (투표자 확인)

투표권에 대한 확인은 각 단대 명부 확인으로 한다. 두 번 투표를 하거나 대신 투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투표자를 경고 조치하거나 자격을 박탈한다.

제 5조 (투표소)

- 가. 출구와 입구는 투표인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단, 해당 투표구 참관인, 선관위원, 중선관위원은 가능하다.)
- 나. 해당 대학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해야 한다.)

제 6조 (투표 절차)

- 가.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 나. 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학생증, 주민등록증, 도서관 출입증)를 제출하고 선관위원 명부확인 후 투표 용지에 참

관인 확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다. 단, 증명서가 없을 경우 명부가 확인되면 참관인 또는 선관위의 재량에 맡긴다.

다. 투표인은 투표 용지를 배부받은 후 투표한다.

제 7조 (투표함의 봉합 및 보관)

가. 선관위원은 투표 종료후 참관인의 참석 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나.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는 별도로 수거,봉인하여야 한다.

다. 3월 24일 오후 6시부터 3월 25일 오전 8시까지 투표함을 중선거위와 각 참관인 1인의 참여하에 중선거위실에서 보관한다.

제 8조 (투표함의 송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관위와 참관인의 관리 하에 중선거위실로 옮긴다.

제 9장 개 표

제 1조 (개표 시작, 순서)

개표는 총여, 총합 순으로 하며, 투표함의 완전 도착 후 선관위 및 개표 참관인의 참석 후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코 드 번호 역순으로 개표하기 시작한다.(단, 다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는 단대 선관위와 참관인의 입회 하에 중앙 투표함에 넣고, 단대 개표 후에 중앙 투표함에서는 단대 투표 용지가 나오면 단대, 중선거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개 표 결과에 포함한다.)

제 2조(무효표)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무효표로 인정한다.

제 10장 선거무효

제 1조

1·2위의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은 경우

제 2조

오차가 5% 이상인 경우

제 3조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제 4조

이후 대책은 중선거위, 각 후보자, 선본 대표가 모여 결정한다.

제 11장 후보자의 박탈 및 경고 조치

제 1조 (후보 자격 박탈)

가. 입후보자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나 마감 10분이 지나도 구비 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나. 합동 유세시 한 유세당 유세 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한 경우

다.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라. 중선거위의 조치를 실추시킨 경우

제 2조 (경고 조치)

- 가. 시행 세칙을 어기는 경우
- 나. 중앙·단체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다. 기타 사항은 중선관위에서 심의·결정한다.

제 12장 당선 공고 및 이의 제기

제 1조 (당선 공고)

중선관위는 개표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 2조 (이의 제기)

당선에 이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당선 공고 5일 이내로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 3조 (중선관위의 해산)

중선관위는 다른 후보로부터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당선 공고 7일째 당선을 확정하고 해산한다.